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2153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문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 및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명백한 오기는 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다. 피고는 C의 여동생이고, D은 C, 피고의 모친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3. 7. C, 피고 앞으로 2008.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6. C 앞으로 2008.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C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1. D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2018. 12. 19. 수취인 원고,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20. 2. 19.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C, 원고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103호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C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C 지분 및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6. 19. 피고에게 위 지분 및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8910호로 2019. 6. 1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계속해서 같은 날 위 다항 기재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0.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상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F의 구속상태를 풀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가 C에게 실제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작성한 것이어서 그 발행행위 등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피고는 피고의 모친 D이 취득세의 부담 등을 줄이고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D의 가등기와 피고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등기원인사실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성립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다른 날 실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여 그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 목적물은 그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이 2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함이 인정되고, D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이후 그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광주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변형기제조업)
동
 1층 492.00㎡(공장)
 2층 492.00㎡(공장)
동
 1층 165.00㎡(식당,휴게실,화장실,샤워실,주방,기숙사)
 2층 165.00㎡(기숙사,휴게실,화장실)
2. 경기도 광주시
 공장용지 1551㎡
3. 경기도 광주시
 전 2023㎡
4. 경기도 광주시
 도로 198㎡
5. 경기도 광주시
 도로 177㎡
6. 경기도 광주시
 도로 35㎡ -이상-

